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03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3구합1340 주민세(재산분)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주식회사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5. 12. 16.

판 결 선 고 2016. 2. 3.

주 문

1. 피고가 2012.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분 재산할 사업소세(가산세 포함) 108,961,050원의 부과처분 중 45,812,7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분 재산할 사업소세(가산세 포함) 108,961,050원의 부과처분 중 15,210,8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03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redacted]발전소 등 6개의 발전소를 두고 발전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이하 [redacted]발전소를 '[redacted]사업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7. 7. 27.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43조 제4호, 제247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인 '사업소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보령사업장의 건축물, 기계장치 및 저장시설의 연면적 합계를 310,557㎡(= 건축물 227,695㎡ + 기계장치 및 저장시설 82,862㎡)로 산정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에게 2007년분 재산할 사업소세로 77,639,250원(= 310,557㎡ × 2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 18. 원고가 2007년분 재산할 사업소세를 산출하면서 [redacted]사업장의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249,968㎡를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누락한 연면적에 해당하는 2007년분 재산할 사업소세 108,961,05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2,498,4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3,970,650원 포함)을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연면적 산출근거의 누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03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부고지서에 [redacted]사업장의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 연면적 산정의 오류

원고가 2007년분 재산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누락한 [redacted]사업장의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은 60,843㎡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누락한 연면적을 249,968㎡로 산정함으로써 별지2 산정표 기재와 같이 오류(아래에는 원고가 주장한 주요 내용을 설시하였고, 건축물, 기계장치, 저장시설별로 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별지2 산정표의 '원고 주장'란 기재와 같다)를 범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산출한 재산할 사업소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 없는 시설물의 경우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에 한정하여 연면적 산정대상인 사업소용 건축물에 포함되는데, 피고는 [redacted]사업장의 냉각수심층취수로, 냉각수 취수장 앞 사다리꼴 모양 구조물, 냉각수 취수장 옆 배수로, 냉각수배수관로 등 저장 기능이 없는 급배수시설로서 수조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을 모두 수조로 보고 이를 사업소용 건축물에 포함하여 연면적을 산정하였다.

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은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제외되는데, 여기에는 오염물질을 직접 수집·처리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화학물질 등을 가공·저장하는 시설, 처리된 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 등 오물처리나 공해방지를 위한 부대시설이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오염물질을 직접 수집·처리하는 시설이 아닌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화학물질 등을 가공·저장하는 시설, 처리된 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03

설 등을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제외하지 않고 이를 모두 포함하여 연면적을 산정하였다.

다) [redacted]사업장 기력 7, 8호기는 2008. 7. 21.에야 최초로 전기를 생산하여 외부로 송전하였으므로, 기력 7, 8호기의 건축물, 기계장치 및 저장시설은 2007년분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는 기력 7, 8호기의 건축물, 기계장치 및 저장시설을 모두 '사업소용 건축물'에 포함하여 연면적을 산정하였다.

라) 건축물에 부속하거나 건축물의 내부에 있는 기계장치 및 저장시설은 건축물과 별개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기계장치나 저장시설의 일부가 건축물 외벽 밖으로 일부 돌출되어 있더라도 그 돌출된 부분은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의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는 건축물 외부로 돌출되어 있는 기계장치 등을 모두 사업소용 건축물에 포함하여 연면적을 산정하였다.

마) 피고가 사업소용 건축물에 포함한 건축물, 기계장치나 저장시설 중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어떠한 것인지 특정이 되지 않는 경우, 원고가 재산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할 때 이미 사업소용 건축물에 포함하여 연면적을 산정한 기계장치나 저장시설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 제1항의 해석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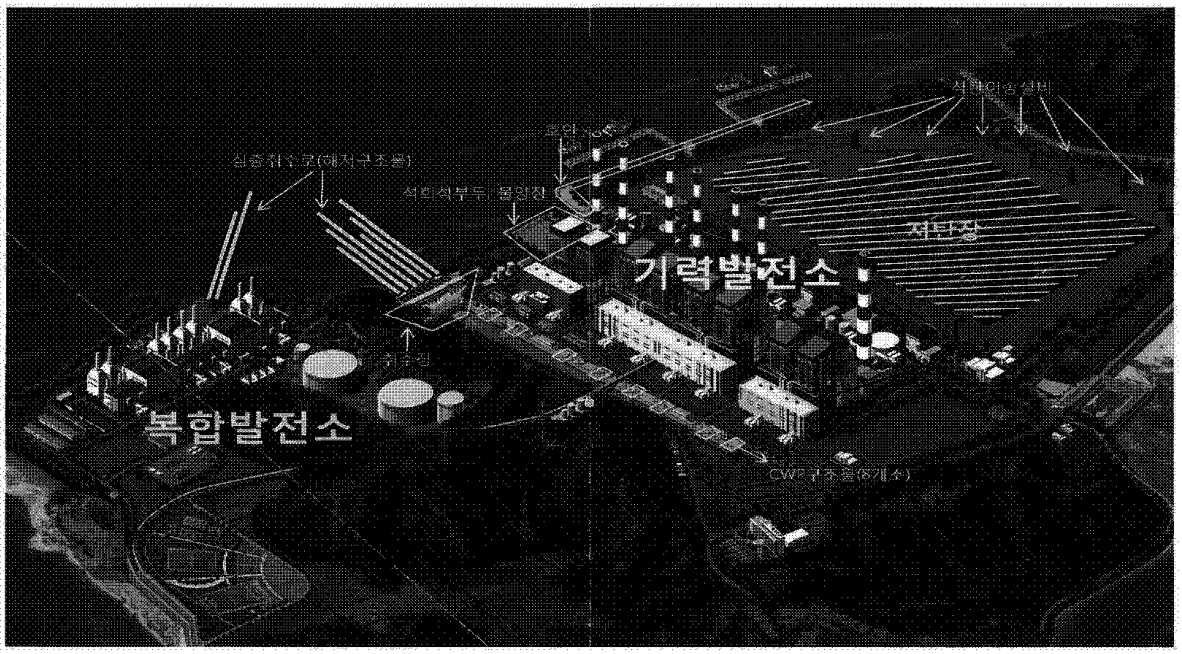
나.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03

다. 인정사실

1) [redacted]시 [redacted]면 [redacted]리에 있는 [redacted]사업장은 증기의 압력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기력발전소(기력 1호기부터 8호기까지 있음)와 기력발전 방식과 가스의 압력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 결합한 복합발전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 배치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2) [redacted]사업장의 냉각수 심층취수로는 발전소에 공급할 냉각수를 바다에서 취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로 해수가 유입되는 흡입구, 취수관로 이루어져 있고, 취수장으로 이어진다. 취수관로는 해저면 부근에 약 130~150m 길이로 설치되어 있고 취수관로 끝에 있는 흡입구는 해저면 취수관로보다 3~5m 정도 높게 설치되어 있어 취수관로로 흙이나 모래가 들어오게 하는 것을 막아주며 간조시에도 해수면 아래에 위치한다. 취수장에는 펌프시설과 펌프시설로 양수한 해수를 저장하는 수조가 있고 펌프시설 앞에는 사면이 약 19m 높이의 콘크리트로 연결되고 바닥면에 콘크리트가 타설된 위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사다리꼴 모양의 시설물(이하 '이 사건 취수장 구조물'이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03

이 있는데 바다와 접한 콘크리트 벽면 아래 부분에 취수관로가 연결되어 있고 이를 통해 이 사건 취수장 구조물 안으로 해수가 유입된다. 이에 이 사건 취수장 구조물은 간조시에도 일정 수위가 유지되고 있어 연결된 펌프시설을 통해 안정적으로 냉각수를 공급할 수 있다. 한편 취수장의 수조 양옆과 뒤로는 수조에서 넘친 해수가 이 사건 취수장 구조물로 흘러갈 수 있게 연결된 콘크리트 구조물인 냉각수 배수로가 있고, 이 사건 취수장 구조물의 바다 쪽 방면 앞에는 둑 형태의 콘크리트 구조물(사면이 콘크리트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는 아니다)이 있다.

3) [redacted]사업장의 냉각수배수로는 복수기를 통과한 냉각수를 원활히 바다로 배수하기 위한 콘크리트 박스형 구조물로 지하에 매설되어 있다. 냉각수배수로의 중간에는 해수가 복수기 방향으로 월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시설물(seal well)이 설치되어 있는데 콘크리트 박스 형태의 이 시설물에는 해수월류방지를 위한 둑(weir)이 있어 복수기 쪽의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둑에서부터 해수면 방면으로 유속을 빠르게 증가하게 한다. 냉각수배수로의 바다 쪽 배출구 부분에는 바다로 배수하는 통로의 일부인 콘크리트 시설물이 있는데 이 시설물은 바닥의 높낮이를 다르게 하여 유속을 증가시키면서 소수력발전장치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4) 원고가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유연탄은 연소되면서 질소산화물, 비산먼지, 이산화황 등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데, 원고는 화학적 또는 기계적 방법으로 통해 이를 정화시킨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연탄이 연소되면서 발생한 질소산화물은 암모니아를 사용하여 질소로 만들어 대기로 방출하고, 비산먼지는 전기집진기로 포집하여 저장시설에 보관하다가 시멘트 혼합물 제조업체에 판매하거나 중량이 많이 나가는 경우 회이송장치를 통해 회처리장에 매립하며, 이산화황은 고형 석회석 원료에 물을 섞은 액상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03

질과 반응시켜 슬러리 상태의 석고 부산물이 되게 한 후 이를 저장시설에 보관하다가 탈수과정을 거쳐 분말 형태의 석고로 만들어 판매한다.

5) 원고는 2005년경 보령사업장의 기력 7, 8호기 건설공사를 시작하였다. 기력 7호기는 2007. 5. 29. 수압시험, 2007. 11. 14. 보일러의 최초점화, 2008. 2. 4. 기력 7호기로 전기를 최초 생산하여 외부로 송전하는 계통병입을 거쳐 2008. 6. 16. 최종 준공되었고, 기력 8호기는 2007. 11. 20. 수압시험, 2008. 5. 15. 보일러 최초점화, 2008. 7. 21. 계통병입을 거쳐 2008. 12. 15. 최종 준공되었다.

6) 피고는 2012. 7. 18.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냈는데 그 납세고지서에는 과세표준으로 '249,968'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재산할 사업소세를 산출할 때 누락한 건축물, 기계장치, 저장시설의 명칭, 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납부고지서에 연면적 산출근거를 누락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2. 7. 18. 원고에게 과세표준인 사업소용 건축물의 총 연면적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원고가 재산할 사업소세를 산출할 때 누락한 건축물 등의 명칭, 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연면적 산정의 오류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 제1항에 따른 연면적 산정의 구체적 기준

(1)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소용 건축물'에 포함되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03

시설물을 저장시설인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로 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는 저장시설을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5호는 급·배수시설을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의 산정대상인 '수조'는 물을 저장하여 사용하기 위한 시설물을 의미하고, 수원지에서 물을 취수하는 시설인 급수시설이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서 사용한 물을 공공용 하수도나 하천, 바다 등으로 배수하는 배수시설, 그 밖에 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설치된 송수관은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하에 이 사건에서 본다.

먼저, 앞서 본 [redacted]사업장의 심층취수로 흡입구와 취수관로의 구조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심층취수로 흡입구와 취수관로는 수원지인 바다에서 펌프시설이 연결된 이 사건 취수장 구조물로 해수를 보내는 것이 주된 용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물을 저장하여 사용하기 위한 시설인 수조가 아니라 물을 취수하는 시설인 급수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냉각수 취수장 옆 배수로의 구조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배수로는 취수장 수조에서 넘친 물을 이 사건 취수장 구조물로 물을 운반하는 것이 주된 용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수조가 아니라 수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취수장 구조물 앞에 있는 둑 형태의 구조물은 사면이 콘크리트로 연결된 구조가 아니어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므로 수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층취수로 흡입구, 취수관로와 취수장 옆 배수로, 위 둑 형태의 구조물은 모두 재산할 사업소세 산출을 위한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제외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03

다음으로, 이 사건 취수장 구조물은 바닥면과 사면이 콘크리트구조로 연결된 하나의 큰 통으로 설계되어 있는 점, 비록 이 사건 취수장 구조물에 연결된 심층수취수로를 통해 물이 바다로 흘러갈 수는 있으나 취수장 펌프로 해수를 지속적으로 취수할 수 있도록 간조에도 일정 수위가 유지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취수장 구조물은 물을 저장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축조된 시설물인 수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취수장 구조물은 재산할 사업소세 산출을 위한 사업소용 건축물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redacted]사업장의 냉각수배수로 내에는 해수의 월류를 방지하는 시설이나 소수력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그 구조나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시설은 물을 저장하여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의 유속을 빠르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재산할 사업소세 산출을 위한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제외된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1호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건축물 중 실제 가동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을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① 위 규정이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을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제외한 취지는 사업소세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라는 것을(대법원 2008. 10. 09 선고 2008두10188 판결 등 참조) 고려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는 시설은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므로, 오염물질을 직접 수집·정화하는 시설 이외에 그 과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대시설을 위 규정에서 정한 '오물처리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03

설' 및 '공해방지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점, ②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제8호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처리시설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매립, 배출 등 최종처리시설도 모두 폐기물처리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구 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2호,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11. 8. 19. 환경부령 제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별표4]는 대기오염방지시설에는 중력집진시설 등 방지시설뿐만 아니라 그에 부속된 기계장치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은 오염물질을 직접 수집·정화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을 정화하기 위한 물질 등을 가공·이송·저장하는 시설, 처리된 오염물질을 이송·저장하는 시설 등 오물처리 및 공해방지를 위한 목적에서 설치되어 실제 오물처리 및 공해방지의 전 과정에 사용되는 일체의 시설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발전을 위해 유연탄을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질소산화물을 정화하기 위한 암모니아 저장시설, 비산먼지를 포집하여 저장하거나 배출·매립하는 시설, 이산화황을 슬러리로 상태의 석고 부산물로 만드는 과정에서 석회석을 저장·이송하고 석고 부산물을 탈수·배출하는 시설 등은 모두 오물처리 및 공해방지를 위한 목적에서 설치되어 실제 오물처리 및 공해방지 과정에서 사용되는 시설이므로, 재산할 사업소세 산출을 위한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1호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건축물 중에서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을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제외한다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03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항 제2호는 건축물이 없는 기계장치와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이라도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이라도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공작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이 아닌 기계장치, 저장시설은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구 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는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4조 제1호는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7월 1일로 정하고 있는바,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인 사업소용 건축물은 해당연도 7월 1일 기준으로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보령사업장 기력 7, 8호기는 2005년경 착공하여 각각 2008. 2. 4. 및 2008. 7. 21.에야 최초로 전기를 생산하여 외부로 송전하였고 2007. 7. 1. 당시에는 기력 7호기만 수압시험을 마쳤을 뿐, 보일러 점화나 계통병입, 준공이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기력 7, 8호기 관련 건축물, 기계장치 및 저장시설은 2007. 7. 1. 기준으로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볼 수 없어 2007년분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기계장치와 저장시설은 표면적이 아니라 수평투영면적으로 연면적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바, 기계장치와 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03

장시설의 경우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것은 이미 건축물의 연면적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산정할 것은 아니지만, 건축물의 외부로 돌출되거나 옥상 또는 건축물 외에 설치되어 건축물의 연면적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연면적 산정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상과 같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 제1항에 따른 연면적 산정의 구체적 기준을 전제로 원고가 2007년분 재산할 사업소세를 산출하면서 누락한 보령사업장의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은 105,063.53㎡이다(개개의 건축물, 기계장치 및 저장시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은 별지2 산정표의 '법원의 판단'란 각 기재와 같고, 그 증거는 해당 '입증자료'란 각 기재와 같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정당한 재산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앞서 인정한 원고가 누락한 보령사업장의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을 기초로 산정한 2007년분 재산할 사업소세(가산세 포함)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5,812,720원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03

므로, 이 사건 처분 중 45,812,7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누락 연면적	②세율	③본세 (=①×②)	④신고불성실 가산세 (=③×0.2)	납부 의무 지연일	⑤납부불 성실가산세	합계 (=③+④+⑤)
105,063㎡	250원(1㎡당)	26,265,750원	5,253,150원	1,814일	14,293,820원	**45,812,720원**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연면적 중 1㎡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10원 미만은 보령시시세기본조례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버림
※ 납무의무지연일은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기한일 다음날인 2007. 8. 1.부터 이 사건 처분일까지의 일수
※ 신고불성실 가산세 = '③본세' × 0.03% × 납부의무지연일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식

판사 정교형

판사 정유미 출산휴가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03

별지1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25조(납세의 고지)

①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1. 사업소세

가. 재산할 : 과세기준일

제243조(정의)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2. "재산할"이라 함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4.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244조(납세의무자)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1. 재산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03

매년 7월 1일(이하 이 절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제247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재산할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제248조(세율)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재산할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②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세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납세의 고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한다.

1.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 다만, 1매의 고지서에 3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근거의 열람 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세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제202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243조 제4호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03

다).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합숙사·사택·구내식당·의료실·도서실·박물관·과학관·미술관·대피시설·체육관·도서관·연수관·오락실·휴게실·병기고·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를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

②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는 2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사용면적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네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고,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제211조(과세표준의 계산방법)

① 재산할에 있어서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중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6. "처리"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리(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리를 말한다.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03

시설을 말한다.

■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2011. 1. 21. 대통령령 제2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제5조 관련)

1. 중간처리시설
 가. 소각시설
 1) 일반 소각시설
 (생략)
 나. 기계적 처리시설
 1) 압축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파쇄·분쇄 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3) 절단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4) 용융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5) 연료화시설
 6) 증발·농축 시설
 7)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 등의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8) 유수 분리시설
 9) 탈수·건조 시설
 10) 멸균·분쇄 시설
 다. 화학적 처리시설
 1) 고형화·안정화 시설
 2) 반응시설(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3) 응집·침전 시설
2. 최종 처리시설
 가. 매립시설
 1) 차단형 매립시설
 2) 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발전·연료화 처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03

나.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구 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11. 8. 19. 환경부령 제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대기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대기오염방지시설(제6조 관련)

1. 중력집진시설
2. 관성력집진시설
3. 원심력집진시설
4. 세정집진시설
5. 여과집진시설
6. 전기집진시설
7. 음파집진시설
8. 흡수에 의한 시설
9. 흡착에 의한 시설
10.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11.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12. 응축에 의한 시설
13.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14.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시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03

15. 위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시설과 같은 방지효율 또는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비고 : 방지시설에는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하기 위한 장치(후드), 오염물질이 통과하는 관로(덕트), 오염물질을 이송하기 위한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예비용을 포함한다) 등을 포함한다. 끝.